

# 공지사항

## 중고품 수입추천 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17호

상공자원부고시 1993-12호(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3.4.15) 제1장 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본회”라 한다)장이 추천토록 되어있는 중고품 수입추천(이하 “수입추천”이라 한다)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3. 4. 15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 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제1장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위임된 수입추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대상품목)

동 고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품목으로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와 정밀 전자계측기를 추천대상 품목으로 한다.

### 제3조(추천제한)

수입코자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에 의하여 수입선 다변화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한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 제4조(추천대상자 자격)

- (1) HS 8471 해당품목중 중형 및 대형의 컴퓨터 본체와 그 주변기기는 실수요자에 한한다.
- (2) 기타의 컴퓨터 본체와 그 주변기기 및 정밀전자 계측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에 한한다.

### 제5조(추천기준)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것 또는 원산지가 대한

민국인 것

### 제6조(추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입추천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수입승인 신청서 6부(임대차 수출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1부(무상기증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 입증서류)
-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리스계약서 1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카탈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 (7) 기타 수출입별도공고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7조(중고품수입 심의위원회 운영)

수입추천 업무의 원활화와 심의를 위하여 중고품 수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심의대상)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추천을 처리할 수 있다.

1. 본회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2.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 제9조(처리기간)

(1) 추천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한다.

(심의회: 상정건은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





# 공지사항

나. 정부의 정책사업(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다.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신규로 개발된 기계설비

라. 정부기관으로 부터 형식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기계설비

마. 기술도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바. 주문제작에 의하여 새로이 설계된 품목으로서 신청접수기관이 확인한 기계설비

사. 플랜트 성격을 가진 건설용 기계설비(이동형 기계설비로서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것은 제외)

아. 기타 신규개발기계류의 심의위원회가 신규개발품으로 인정한 기계설비

### 3. 신청 및 등록기관

가. 신청기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557-2417)의 8개기관

나. 등록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4.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개발기계설비 등록신청은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하되 품목별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신규개발 기계설비 생산신고서(소정양식) 1부

나. 신고품목 용도설명서 및 서약서(소정양식) 각1부

다. 국산개발(판매실적) 확인서류사본(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중 택일) : 모델확인가능요.

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품사진, 도면, 카탈로그 중 택일/필요시 성능개선비교표 등)

\* 도장지참(접수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 5. 용자 대상품목 선정절차

가. 국산기계설비 개발업체는 개발품목의 양산개시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신청접수기관에 개발품목을 신고한다.(한국전자공업진흥회 557-2417)

나.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이외의 신청접수기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수시로 통보한다.

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검토결과(또는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완료된 품목을 용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한다.(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 6. 용자대상품목 통보

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등록된 개발품목 및 업체명단을 매월 해당은행에 통보한다.

나. 용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업계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확인서를 우선 발급하고 차후에 용자대상품목 명부에 추가한다.

다. 해당은행은 용자대상 품목명부 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해서 용자대상을 취급한다.

### 7. 기타

가. 판매개시(또는 양산개시)란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시점을 말하며 시제품을 제작, 수요자에게 판매하여 품질시험 단계에 있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단순한 모델변경은 신제품 개발로 보지 아니하고 주요기능이 변경되거나 성능이 향상(생산성 향상, 에너지절감 등)된 경우는 신제품 개발로 본다.

다. 주문시마다 설계를 새로이 하여 개발·제작된 플랜트 성격의 기계장치류는 심의 위원회가 신규개발품 여부를 결정한다.

# 공지사항

8. 문의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산업전자과 557-2417,  
553-0941 FAX 563-7339

## '93. 2차 기계류·부품 및 소재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 조사 안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산업 구조의 개편과 무역 역조의 근원적인 시정을 위하여 국산화 품목을 발굴, '92년에 1,023개 품목(양산 223개 포함) 고시와 '93. 1차 649개 품목(양산 144개 포함)을 고시하였고 기고 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공업발전기금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육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3. 2차 고시품목을 발굴하여 적절한 자금지원을 계획코자 하오니 신제품개발이 필요한 품목과 개발 완료되어 양산화가 필요한 품목은 다음과 같이 해당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개발 협의회명	설치단체명	소관품목	제출 기한
가전제품, 전자응용기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가전산업부 (553-0941/7)	가전제품, 전자응용기기	'93. 6. 19 (토)
컴퓨터 H/W 통신기기, 의료기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부 (553-0941/7)	컴퓨터 H/W 통신기기분야 의료기기분야	'93. 6. 19 (토)
전자부품 (반도체,소재)	전자부품종합기술 연구소 사업개발1과 (528-8661/2)	전자부품, 반도체, 소재	'93. 6. 19 (토)
계측제어기기	한국계측기연구조합 (556-1581)	계측제어기기	'93. 6. 19 (토)
컴퓨터S/W	정보처리산업진흥회 기술진흥부(713-8848)	컴퓨터S/W	'93. 6. 19 (토)

## 공단용지 분양안내

1. 전주 제3공단용지 분양
  - 분양면적 : 782,876평
  - 분양가 : 평당 155,000원
  - 분양기간 : '93. 5. 19~7. 16(87일간)
  - 연락처 :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TEL : 0652-87-0323)
2. 강원도 농·광공단지
  - 분양지역
    - 춘천시 퇴계농공단지(분양면적 : 100,748평,  
분양가 : 평당 289,000원)
    - 화천군 원천농공단지(분양면적 : 30,589평,  
분양가 : 평당 126,000원선)
    - 영월군 문곡농공단지(분양면적 : 34,182평,  
분양가 : 평당 120,000원선)
    - 철원군 김화농공단지(분양면적 : 45,000평,  
분양가 : 평당 110,000원선)
    - 삼척군 원덕농공단지(분양면적 : 33,301평,  
분양가 : 평당 110,000원선)
    - 삼척군 도계광공단지(분양면적 : 30,000평,  
분양가 : 평당 100,000원선)
    - 태백시 철암광공단지(분양면적 : 30,250평,  
분양가 : 평당 60,000원선)
    - 정선군 증산광공단지(분양면적 : 35,050평,  
분양가 : 평당 55,000원선)
    - 정선군 함백광공단지(분양면적 : 22,171평,  
분양가 : 평당 60,000원선)
  - 분양시 혜택 :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3. 동해북평 공업단지
  - 분양면적 : 744,000평
  - 분양가격 : 평당 250,000원 수준
  - 단지준공예정일 : '93. 12월
  - 연락처 : 강원도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TEL : 02-785-4015/6)
  - \* 공단유지 홍보책자는 본회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음.

# 공지사항

## 국민제안제도 실시에 따른 안내

정부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불편·불만사항, 제도개선이 미흡한 사항, 행정제도·형태·관행 등이 국민편의 보다는 형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었던 사항 등을 과감히 발굴 이를 적극 개선하고자 국민제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도를 널리 홍보 사회저변에 확산·전파코져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동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입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사용료 소득 등 원천징수 요령 안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본·기술 인적 자원의 규모가 커지고 우리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외화소득 규모도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우리기업이 해외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기업이 실제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자 할 때 복잡한 조세규정과 조세감면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이의 안내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중 상공자원부에 해당하는 외자도입 관련 사항만 정리 안내 합니다.

### 1. 원천징수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 및 9호

○소득세법 134조

### 2. 원천징수 대상

○외자도입법, 기술용역육성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해 도입되는 기술(용역)대가

###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류 및 원천징수 방법

개 인			법 인		
소득세법 제134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	소득명	원천징수율 (%)	각호	소득명	원천징수율 (%)
1	이 자	25	1	이 자	25
2	배 당	25	2	배 당	25
3	부 동 산	×	3	부 동 산	×
4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료	2	4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료	2
5	사 업	2	5	사 업	2
6	인적용역	20	6	인적용역	20
7	근 로	×	×	×	×
8	퇴 직	×	×	×	×
9	양 도	×	7	양 도	×
10	산 림	×	8	산 림	×
11	사 용 료	25	9	사 용 료	25
12	유가증권양도	10 (25)	10	유가증권양도	10 (25)
13	기 타	25	11	기 타	25

(× : 해당없음)

### 4. 소득별 감면기간 및 감면방법

#### (1) 배당소득

○감면근거 : 외자도입법 제14조

○감면기간

대 상 기 간	감 면 크 기
○'91. 2. 28 이후 인가분	○5년간 50% 감면
○'91. 2. 28 이전 인가분	○5년간 100% 감면
○'84. 6. 30 이전 인가분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감면방법

배당소득의 종류	소득구분	감면대상 여부	비 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실질배당	인가영업소득 인가외영업소득	감 면 감면배제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	감 면	발상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 공지사항

## (2) 사용료 소득

- 현행법상 기술(용역) 도입은 외자도입법, 기술용역육성법 및 외국환 관리법 등에 의하고 있으나
-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대가에 한함.

대상기간	감면기간 감면범위	감면대상 기술	감면방법
'91.3.1이후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100%	재무부의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도기술	주무장관에 조세면제 신청
'91.3.1이전 '84.7.1이후 신고분	〃	계약에 따라 인가(신고수리)된 기술	면세포기 가능
'84.7.1이전 인가분	인가일로부터 5년간 100%, 3년간 50%	〃	인가된 기술 자동 면제

### 국제특허연수원 지적재산권 연수안내

국제특허연수원은 상공부 특허청 산하의 지적재산권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지적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수과정을 개설중에 있사오니 기업체, 연구소의 많은 연수 참여를 바랍니다.

#### <참고>

- 기숙사 및 각종 편의시설 완비
- 수강료에는 교육기간중 숙박비, 식비, 교재대, 강사료 등이 포함된 것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통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2) 861-1984, 1985
  - 주소 : (우) 305-350 대전직할시 유성구 가정동 121-1(대덕연구단지내) 국제특허연수원 교학과

교육과정	교육대상	기간및시기	수강료	주요교육내용
산업재산권기초과정	기업체 직원 등 (산재권 초보자)	4박 5일 • 6.14-6.19 • 9.6-9.10	49,000원	○ 특허·상표제도, 특허 정보검색요령,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등
특허·실용신안전문과정	기업체 직원 등 (산재권 중급자)	4박 5일 • 11.1-11.5	85,000원	○ 특허심사기준, 청구범위해석, 특허분쟁사례등
상표·의장전문과정	기업체 직원 등 (산재권 중급자)	4박 5일 • 7.5-7.9	85,000원	○ 상표·의장심사기준, 기업의 상표개발 및 관리전략, 상표·의장출원 실무등
연구개발요원과정	연구소 연구원 등	4박 5일 • 9.20-9.24 (화학) • 10.4-10.8 (종합)	73,000원	○ 특허명세서 작성 및 청구범위해석, 특허정보검색 요령, Patent Map 실무등
외국산업재산권제도과정	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직원 등	4박 5일 • 10.11-10.15	104,000원	○ 미국, EPO 특허·상표제도등
PCT 국제출원실무과정	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직원등	3박 4일 • 7.12-7.15	49,000원	○ PCT 출원절차 등
단체연수과정	신청업체 임직원등 (업체희망시기)	2박 3일	42,000원	○ 기업의 특허관리 전략, 특허분쟁, 기타업체 희망과목등

